

행정자치부

통 보

제 목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 산림사업실적 미등록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, 원주시, 삼척시, 횡성군, 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, 철원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제군, 고성군, 양양군

내 용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산림조합, 국유림영림단외의 자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사업법인 요건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산림청장은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 할 수 있다.

또한,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, 제5항, 제6항에서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,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,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면서 산림기술자 이중취업, 자격증 대여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 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있다.

이에 따라 산림청 ○○○○○○과-0000(2010. 0. 00.)호, 동-0000(2010. 0. 00.)호에서 2010년부터 산림기술자의 이중등록 등 예방 및 산림사업법인·산림기술자 관리를 위하여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(“이하 법인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, 매뉴얼을 마련하여 산림사업실적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고

또한, 강원도에서도 아래와 같이 주요업무 추진계획(2013~2016)에서 모든

산림사업의 실행에 있어 계약 후 현장대리인 선임 사항 및 계약사항 입력, 전 직원 법인관리시스템 의무 가입 등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.

2013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, p211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
 2014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, p220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
 2015년도 산림관리분야 주요업무추진계획, p70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
 2016년도 산림관리분야 주요업무추진계획, p73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

그런데도 강원도 본청(○○○○연구원 포함) 및 12개 시·군에서 아래[표] 법인관리시스템 산림사업실적 등록 현황과 같이 2012~2016. 9월까지 총 사업건수가 4,424건인데 입력실적이 1,653건으로 37%에 불과하며

○○○○연구원(본원)의 경우 입력비율이 8%에 불과하고,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 시스템 산림사업 실적 등록이 저조하여, 산림기술자의 이중 등록 등 예방 및 산림사업법인, 산림기술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.

[표] 법인관리시스템 산림사업실적 등록 현황

시·도	사업건수	입력건수	입력비율(%)
계	4,424	1,653	37
본 청	520	50	10
○○○○연구원(○○)	251	20	8
○○○○연구원(○○○○)	78	26	33
원 주 시	242	53	22
삼 척 시	430	322	75
횡 성 군	224	25	11
영 월 군	373	208	56
평 창 군	291	104	36
정 선 군	314	90	29
철 원 군	280	95	34
화 천 군	157	66	42
양 구 군	171	27	16
인 제 군	494	215	44
고 성 군	291	135	46
양 양 군	308	217	70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, 원주시장, 삼척시장, 횡성군수, 영월군수, 평창군수, 정선군수, 철원군수, 화천군수, 양구군수, 인제군수, 고성군수, 양양군수는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 산림사업 실적 등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